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정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802

발의연월일: 2024. 11. 22.

발 의 자: 김정호·허종식·박희승

최기상 • 윤후덕 • 정성호

이연희 · 허성무 · 임미애

신영대 · 민형배 · 박 정

어기구 • 이소영 • 이훈기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상표권자 등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 권에 관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상표권 침해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, 특히 최근 특허청에 접수된 위조상품 제보의 약 97%가 온라인 유통 위조상품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현행법상 규정이 미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됨.

이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, 온라인서비스제 공자의 행위에 따른 상표권·전용사용권 침해행위 및 책임제한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상표권 등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108 조 및 제108조의2·제108조의3 신설 등).

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

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. "온라인서비스제공자"란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(「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)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품 등을 양도 또는 인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.

제10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행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.
- 1.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 유발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중개의 이용을 계속하도록 허락하는 행위
- 2.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 유발 사실을 알면서도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거나 알선하는 행위

제108조의2 및 제10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8조의2(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)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

조치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와 관련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실시권이 침해되더라도 그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- 1.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가 인정되는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단시키거나 이용자가 접근할 수 없게 한 경우
- 2.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한 경우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술적·경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- 제108조의3(정보 제공의 청구) ①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(이하 이 조에서 "권리주장자"라 한다)는 민사상의 소제기 및 형사상의 고소를 위하여 해당 온라인서비스제 공자에게 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해당 침해자의 성명과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수 있다.
 -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거절한 경우 권리주 장자는 특허청장에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그 정보의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.

-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침해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.
- ④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2항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정보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특허청장은 그 정보를 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한 권리주장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침해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제1항의 청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⑥ 그 밖에 권리주장자의 침해자 정보 제공 요청 및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34조의2(벌칙) 제108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요청되거나 청구된 목적 외의 용도로 해당 정보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 | 제2조(정의) ① |
|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| |
| 1. ~ 11. (생 략) | 1. ~ 11. (현행과 같음) |
| <u> <신 설></u> | 12. "온라인서비스제공자"란 이 |
| | 용자들이 정보통신망(「정보 |
| |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|
| |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 |
| |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|
| | 말한다)에 접속하거나 정보통 |
| | 신망을 통하여 상품 등을 양 |
| | 도 또는 인도할 수 있도록 서 |
| | 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|
| |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|
| | 자를 말한다. |
| ② ~ ④ (생 략) |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|
| 제108조(침해로 보는 행위) ①・ | 제108조(침해로 보는 행위) ①・ |
| ② (생 략) | ② (현행과 같음) |
| <u><신 설></u> | ③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행한 |
| |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|
| | 당하는 행위는 상표권 또는 전 |
| | 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 |
| | <u>다.</u> |
| | 1.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 |

<신 설>

용권의 침해 유발 사실을 알 면서도 판매중개의 이용을 계 속하도록 허락하는 행위

- 2.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 유발 사실을 알면서도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거나 알선하는 행위
- 제108조의2(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)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와관련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실시권이 침해되더라도 그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 - 1.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가 인정되는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단시키거나 이용자 가 접근할 수 없게 한 경우
 - 2.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 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주기적

<신 설>

으로 실시한 경우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술적・ 경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 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.

제108조의3(정보 제공의 청구) ①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 (이하 이 조에서 "권리주장자"라 한다)는 민사상의 소제기 및 형사상의 고소를 위하여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가지고있는 해당 침해자의 성명과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있다.

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 항에 따른 요청을 거절한 경우 권리주장자는 특허청장에게 해 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 여 그 정보의 제공을 명령하여

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.

-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 스제공자에게 해당 침해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 다.
- ④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2 항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정보를 특허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하며, 특허청장 은 그 정보를 제2항에 따른 청 구를 한 권리주장자에게 제공 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침해자의 정보를 제공받 은 자는 해당 정보를 제1항의 청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 여서는 아니 된다.
- ⑥ 그 밖에 권리주장자의 침해 자 정보 제공 요청 및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34조의2(벌칙) 제108조의3제5 항을 위반하여 요청되거나 청 구된 목적 외의 용도로 해당

<신_ 설>

정보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.